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970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박성훈 · 박충권 · 이현승  
김기웅 · 박준태 · 송언석  
박정하 · 박수영 · 조정훈  
이인선 · 김기현 · 엄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임. 투자손실이 증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밸런싱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해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을 키우는 등 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충분한 시장영향 검증과 안전장치를 갖추기보다 ‘일단 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막겠다’는 식으로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음. 정부 스스로 출시 직전 해당 상품을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해 놓고도 정작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앞뒤

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었음.

우려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음. 지난 5월 27일 출시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약 10조 4천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27%에 달하는 등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었음.

결국 정부는 출시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음. 이후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까지 추가했음. 정부가 문을 열고, 시장이 요동치자 부랴부랴 빗장을 거는 전형적인 ‘선(先)출시·후(後)수습’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국민의 소중한 투자자금과 자본시장은 정부 정책을 시험해 보는 정책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됨. 고위험 금융상품일수록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1항).

나.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상품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2항).

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거나 그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출시 전에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아울러 출시 전 위기상황분석에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가격변동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3항).

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4항).

마.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 제3장 제2절에 제2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3(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등) ① 금융위원

회는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설정·설립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전에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및 시장영향을 평가하는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 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기준, 위기상황분석의 평가사항·실시 방법·주기,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보유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234조의3(고위험 상장지수집합<br/>투자기구의 위험관리 등) ①<br/>금융위원회는 제234조에 따른<br/>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br/>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br/>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br/>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br/>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br/>수집합투자기구(이하 “고위험<br/>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br/>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p> <p><u>②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br/>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br/>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규모,<br/>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br/>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 등<br/>에 따른 시장영향을 예측하여<br/>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br/>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p> <p><u>③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br/>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br/>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br/>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u></p> |

로부터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설정·설립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전에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및 시장영향을 평가하는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기준, 위기 상황분석의 평가사항·실시 방법·주기, 고위험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보유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